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구합7771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 고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구○○
피 고	○○시장
변 론 종 결	2023. 6. 8.
판 결 선 고	2023. 7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0. 12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 회사는 2018. 2. 8. 부동산매매업, 물류창고업 등 13개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.

나. 원고 회사는 2018. 8. 6. ○○시 B 대 6,64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취득한 뒤, 같은 날 취득가액 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28,000,000원, 지방교육세 2,800,000원, 농어촌특별세 1,400,000원 합계 32,200,00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다. 원고 회사는 2019. 9. 25. 목적사업으로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였고,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, 지상 3층의 방송통신시설(연면적 5,168.81㎡, 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 2020. 7. 10. 사용승인을 받았다. 원고 회사는 2020. 7. 16.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5,849,343,34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63,781,610원, 지방교육세 9,358,940원, 농어촌특별세 11,698,680원 합계 184,839,23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라. 원고 회사는 2020. 11. 16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특법'이라 한다)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시행 법률인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개정된 구 지특법'이라 한다)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, 위 조항의 '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(이하 '이 사건 거부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3. 원고의 주장

원고 회사는 2018. 2. 8. 설립되었으므로 법인 설립 당시의 법령인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.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일"이라 한다)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한다.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0. 7. 10.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,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.

설사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, 개정된 구 지특법 부칙 제8조가 "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"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.

4. 판단

가.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 법령

1)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. 구 지방세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8항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6항은 "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서를 내주는 날(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,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)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" 고 규정한다.

2)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0. 7. 10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위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하고, 그 감면 여부는 위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라야 한다.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"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0. 12. 31.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'창업일'이라 한다)부터 4년 이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)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"고 규정하고,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는 "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"고 규정한다.

3) 원고 회사가 2018. 2. 8. 부동산매매업, 물류창고업 등 13개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. 9. 25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'창업'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원고는 창업 당시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, 물류창고업 등과는 관련 없는 방송통신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, 이 사건 건물이 위 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'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나. 개정된 구 지특법 부칙 제8조의 적용 여부

1)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'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…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'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, 여기서 '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'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,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,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8두13713 판결,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36645 판결 등).

2)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본다. 구 지특법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.

3)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본다. 개정된 구 지특법의 시행일은 2019. 1. 1.이다. 원고는 2019. 4. 4. 이 사건 토지에 '창고시설'을 주용도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었고, 2019. 9. 25.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방송통신업 등을 추가하였으며, 2019. 11. 7. 이 사건 건물을 방송통신시설(촬영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소)로 용도변경허가 받았다. 원고 회사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위 법이 개정·시행된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고,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목적사업에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을 추가하였다. 원고 회사가 구 지특법의 조세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.

다. 구 지특법에 의하였을 때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

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점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), ② 위 규정의 문언상 '창업한 중소기업'이 '해당 사업'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창업한 당시의 사업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, ③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도 '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'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, ④ 원고 회사의 창업 당시 목적 사업의 종류, 창업 당시 목적 사업과 추가한 목적 사업 사이의 관계, 창업 이후의 매출액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구 지특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'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'을 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

라. 소결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.

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엄○○

판사 김○○

판사 정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8조의3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

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일"이라 한다)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(이하 이 조에서 "확인일"이라 한다)부터 4년간 경감한다.

1.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
2. 2020년 12월 31일까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벤처중소기업"이라 한다)

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.

3. 건설업
4. 출판업
5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
6. 방송업
9. 정보서비스업(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)
1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(이하 "물류산업"이라 한다)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8조의3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

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일"이라 한다)부터 4년 이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)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(이하 이 조에서 "확인일"이라 한다)부터 4년간 경감한다.

1.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
2. 2020년 12월 31일까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벤처중소기업"이라 한다)

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.

3. 건설업
4. 출판업
5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
6. 방송업
7. 전기통신업
1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(이하 "물류산업"이라 한다)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
■ 지방세기본법
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28

1. 취득세: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

■ 지방세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0조(과세표준)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,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(「도시개발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내주는 날(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,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)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